

등록번호	복지지원과-23657
등록일자	2015.12.15.
결재일자	2015.12.1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맞춤지원팀장	복지지원과장	복지환경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진소연	김현성	조충현	유용렬	황치영	12/17 최창식
협조	주무관 의회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	이수정 이창하 권순우			

『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정 계획



복지환경국
복지지원과

요 약 지

『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정 계획

■ 제정목적

- 『긴급복지지원법』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‘위기상황’의 사유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‘위기상황’의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하고자 함.

■ 제정근거

- 『긴급복지지원법』 및 동법 시행규칙

■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(안 제3조)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(안 제4조)

■ 추진일정

- 조례제정 계획 수립 : 2015. 12월중
- 성별영향분석 · 부패영향평가 · 규제사전심사 : 2015. 12월중
- 입법예고 : 2015. 12월 ~ 2016. 1월중 【20일간】
-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: 2016. 1월중
- 구의회 제출 : 2016. 2월중(구의회 회기 운영시)
- 공포 : 구의회 회기 운영에 따라 추후 확정



『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정 계획

『긴급복지지원법』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‘위기상황’의 사유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‘위기상황’의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하고자 함.

I 제 정 근 거

- 『긴급복지지원법』 제2조제6호(2014.12.30.공포, 2015.7.1.시행)
- 『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』 제1조의2(2015.6.2.공포, 2015.7.1.시행)

II 제 정 이 유

- 『긴급복지지원법』 제2조제6호 및 『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』 제1조의2에서 ‘위기상황’의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, ‘위기상황’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함.

III 주 요 내 용

- 목적 및 용어(안 제1조~안 제2조)
-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(안 제3조)
 - 가구원의 보호, 양육,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 -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창고, 폐가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
 - 보호자의 가출,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
 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,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
 - 실직,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,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지된 경우
 - 건강보험료, 임차료가 상당기간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(안 제4조)
 - 적정성심사, 지원연장·결정, 지원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할 수 있다.

IV 추진 일정

- 조례제정 계획 수립 : 2015. 12월중
- 성별영향분석 · 부패영향평가 · 규제사전심사 : 2015. 12월중
- 입법예고 : 2015. 12월 ~ 2016. 1월중 【20일간】
-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: 2016. 1월중
- 구의회 제출 : 2016. 2월중(구의회 회기 운영시)
- 공포 : 구의회 회기 운영에 따라 추후 확정

V 참고 사항

- 관계법규 : 『긴급복지지원법』 및 동법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참고자료 : 보건복지부 조례권고안

붙임 : 1.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(안) 1부.
2. 보건복지부 조례권고안 1부.